

Running an association

법인 운영

사단법인

법인설립은 협회 및 회원에게 유익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다양한 책임도 따릅니다.

사단법인이 법으로 정한 의무 및 보고 의무를 준수하게 하는 책임은 우선적으로 위원회 위원 및 공무 담당관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 고지서 발급, 고발, 또는 어떤 경우, 협회의 법인설립 취소에 이르는 수도 있습니다.

협회의 현황 확인

무료 온라인 명부가 NSW에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에 관하여, 기관의 법인명과 번호, 법인설립 날짜 및 등록 상태를 포함한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Fair Trading 웹사이트의 NSW 사단법인 온라인 명부를 방문하십시오.

또한, Australian Security and Investments Commission (호주 증권 및 투자 위원회) (ASIC) 웹사이트 connectonline.asic.gov.au에 있는 기관 및 비즈니스 이름 검색 도구로 검색하십시오.

최소한의 회원수

사단 법인에는 항상 최소한 5명의 회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회원이 5명 미만인 경우 협회의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협회의 회원수에 대한 최대 한도는 없습니다.

협회 관리

협회는 사무를 관리하는 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모든 위원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 중 적어도 3명은 반드시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무 담당관이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 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적으로 최대한, 그리고 주의 및 성실 의무를 다하여, 협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원은 자신의 직무 수행 능력과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에 대하여 반드시 이해 관계를 공개해야 합니다. 위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위원으로서 습득한 정보를 부정직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임 위원은 퇴임 후 14일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협회의 모든 문서가 반드시 공무 담당관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Associations Incorporation Act 2009 (협회 법인설립 법 2009)* (이하 법률)의 28항 및 31항에서 33항까지를 참조하십시오.

영리 활동 및 금전적 이득

협회가 회원들을 위해 금전적 이득을 확보하면 안 됩니다. 협회에서 거둔 이익금은 협회가 설립된 목적을 증진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상업적 기업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법인설립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협회 기록물

위원회가 반드시 확실히 해야 할 일은, 법률의 요구 또는 그 이외의 효율적인 협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협회 기록물들을 협회가 비치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법률의 29항, 31항 및 50항을 참조하십시오.

공무 담당관

협회의 위원회는 18세가 넘고 뉴사우스웨일즈에 거주하는 공무 담당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공무 담당관은 그 직무 덕분에 협회의 승인된 서명자입니다.

위원회는 공석이 된 지 28일 이내에 공무 담당관을 새로 임명해야 합니다. 신임 공무 담당관은 취임한 지 28일 이내에 임명에 관한 세부사항을 반드시 Fair Trading에 통지해야 합니다.

전임 공무 담당관이 반드시 확실히 할 것은 퇴임 후 14일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협회의 모든 문서가 위원회 위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법률의 34항에서 36항까지를 참조하십시오.

공식 주소

협회의 공식 주소는 반드시 NSW 안에 있는 주소이어야 하며, 그 주소에서 보통 공무 담당관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협회로 오는 문서들이 우편을 통해 배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식 주소를 우편 사서함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 담당관은 현재의 주소가 쓸모 없거나 사용 불가능해진 경우 그로부터 28일 이내에 공식 주소의 변경을 Fair Trading 에 통지해야 합니다.

법률의 6항 및 13항을 참조하십시오.

연차 총회

협회의 Annual General Meeting (연차 총회) (AGM)가 협회의 회계연도 마감 후 6개월 이내 또는 Fair Trading이 허가한 기한 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사단법인이 된 협회의 경우 등록된 지 18개월 이내에 제 1차 AGM을 개최해야 합니다.

협회는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AGM에 제출해야 합니다.

AGM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성격은, 제 1계열 또는 제 2계열에 속하는, 협회의 카테고리과 일치해야 합니다.

법률의 37항, 44항 및 48항을 참조하십시오.

재무 보고

법률은 보고 목적을 위해 협회를 두 계열로 구분합니다.

대규모, 또는 제 1계열의 협회는 총수령액이 \$250,000를 초과하거나 유동 자산이 \$500,000를 초과하는 협회들입니다. 제 1계열의 협회는 매년 AGM에서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회원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규모, 또는 제 2계열 협회는 총수령액이 \$250,000 미만이거나 유동 자산이 \$500,000 미만인 협회들입니다. 제 2계열 협회는 재무 사무 요약서를 AGM에 제출해야 합니다.

협회는 AGM 후 1개월 이내 그리고 협회의 회계연도 종료 후 7개월 이내에 연간 재무 요약서를 승인된 양식으로 Fair Trading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의 42항에서 49항까지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 의무

협회의 정식 이름 ('Incorporated' 또는 약자 'Inc'가 포함된 이름)이 읽을 수 있는 글자로 웹사이트, 상품이나 서비스 주문서, 또는 협회의 활동과 연계된 영수증을 포함하여 서신, 진술서, 인보이스, 통지서, 간행물에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개인이 그렇게 해야 할 때에는 협회의 사무에 관한 정보나 문서를 Fair Trading에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의 41항 및 85항을 참조하십시오.

자선 기금 모금

다양한 기관들이 자선활동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행사를 벌입니다.

NSW에서 Charitable Fundraising Act 1991 (자선 기금 모금 법 1991)에 따른 자선 기금 모금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Fair Trading에 02 9895 0011번으로 전화하거나 charity.inquiries@finance.nsw.gov.au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기타 법률에 따른 의무

협회는 협회의 운영에 적용되는 주 및 연방의 관련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기관들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Australian Charities 및 Not-for-profits Commission
www.acnc.gov.au
- Australian Taxation Office www.ato.gov.au
-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
www.ipc.nsw.gov.au
- Anti-Discrimination Board of NSW
www.antidiscrimination.justice.nsw.gov.au
- NSW Industrial Relations (고용)
www.industrialrelations.nsw.gov.au
- Fair Work Ombudsman (고용)
www.fairwork.gov.au
- SafeWork NSW www.safework.nsw.gov.au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세요?

본 안내자료의 주제에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Fair Trading 웹사이트 www.fairtrading.nsw.gov.au를 방문하십시오.

Registry Services (등록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PO Box 22

Bathurst NSW 2795

전화: 02 6333 1400

무료 전화: 1800 502 042

이메일: registryinquiries@finance.nsw.gov.au

www.fairtrading.nsw.gov.au
Fair Trading enquiries 13 32 20
TTY 1300 723 404
언어 지원 13 14 50

이 자료는 법률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토픽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적절한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 State of New South Wales (NSW Fair Trading), 2017
NSW Fair Trading을 통해 집행하는 The State of New South Wales는 공적으로 재정을 보조하는 정보의
재사용을 지원 및 권장합니다. 이 발행물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licence 하에 인가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fairtrading.nsw.gov.au/ftw/Copyright.page 를 방문하십시오.